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51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박수민 · 김재섭 · 이인선
윤한홍 · 추경호 · 정연욱
서지영 · 김선교 · 윤상현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약 26%임. 나아가 자본이득세 또는 유산취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름.

세계 최고(最高) 수준의 현행 상속세제는 세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첫 번째로 세대 간 자본이동에 따른 부의 재분배라는 본래의 과세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대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승계가 임박할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오히려 기업가치 유지 또는 하락을 선호하

는 경향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특히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인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대주주의 세금 회피 유인을 더욱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전반을 제약하여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공익재단 기부자산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미비 역시 막대한 상속자산의 사회적 재분배를 주저하게 만들어 기업가가 사회복지, 교육, 학술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자산이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앞서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성과 내부 견제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에 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유지하려면 기업 또는 기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상속세제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개정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배경임.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안 제26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삭제). 이를 통해 상속세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성장 및 공익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천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억원 초과	1억6천5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의 100분의 1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억원 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의 100분의 1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6천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억원 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1억6천5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천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억원 초과	1억6천5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천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억원 초과	1억6천5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